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502 발의연월일: 2023. 3. 8.

발 의 자:윤후덕·홍기원·김철민

박용진 • 박상혁 • 송갑석

김주영 · 김정호 · 이원욱

이형석 • 최기상 • 박 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 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없이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을 재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음.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상증인신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해바라기센터를 활용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이에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영상증인신문 제도의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0

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① 법원은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나 이익에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 정할 것
- 2. 피의자와 분리된 장소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것
- 3. 친족 간 성범죄인 경우 피의자의 직접 질문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
- 4. 반대신문의 내용은 사전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된 내용과 무관한 질문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
- 5. 진술조력인 및 신뢰관계자의 동석은 허용될 것. 다만, 친족간의

성폭력 범죄인 경우 가해자의 친족은 신뢰관계자로 동석할 수 없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영상증인신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0조의2(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① 법원은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의사나 이익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통하여 신문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경우 검사는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것으로 피의자와 분리된 장소에서피의자를 신문할 것으로 피의자를 신문할 것으로 되어 작의 직접 질문은 허용되지아니할 것으로 내용은 사전에법원에 제출되어야하며, 제

- 출된
 내용과
 무관한
 질문은

 허용하지
 아니할
 것
- 5. 진술조력인 및 신뢰관계자의
 동석은 허용될 것. 다만, 친족
 간의 성폭력 범죄인 경우 가
 해자의 친족은 신뢰관계자로
 동석할 수 없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영상 증인신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